

Zoom-in Trade



- ▶ COVER STORY: INCOTERMS 2010"..... 1
- ▶ FTA News: 국내 공급물품의 FTA 원산지확인 2
- ▶ VOICES FROM THE FIELDS: 수출기업을 위한 전략물자제도 3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4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5
- ▶ WHERE IS GRACE CHANG?: 성공이 아닌 승리! 7
- ▶ ABOUT WRITERS 7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INCOTERMS 는 무역거래 당사자들 간 책임, 의무, 거래내용 등을 정형화한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통일규칙으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1934 년 제정하였으며, 시대별 무역환경을 고려하여 약 10 년 주기로 개정되어 왔다. 지난 2010 년에는 일곱번째 개정작업을 통해 INCOTERMS 2010 이 새롭게 등장하였기에 그 개정배경과 특징을 이번 호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INCOTERMS 2010

I. INCOTERMS 의 개정 배경

1. 관세 자유 지역의 확대

INCOTERMS 2000 은 국제무역거래에 국한되어 적용되었으나, 관세국경을 초월하는 관세 자유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국경을 통과하는데 통관절차의 의미가 점차 약화되고 있어 INCOTERMS 2010 은 국가 국내 거래(동일 관세영역 포함)에도 적용하도록 공식화 하였다.

2. 전자통신 사용의 증대

전자통신의 사용이 증대되는 무역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자통신문이 일반 종이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3. 이동 중 물품의 안전에 대한 관심의 고조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부터 전세계로 확산된 물류보안이 점차 강화되고 국가 간 이동하는 화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무역당사자들이 물품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협조하는 것을 거래조건의 일부로 반영하였다.

4. 운송실무에 있어서의 변화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관행에 따라 FOB, CFR, CIF 조건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 (ship's rail)을 통과하는 시점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물품에 대한 위험이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하였지만, ship's rail 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운송환경을 반영하여 위험의 분기점을 본선적재시점으로 변경하였다.

II. INCOTERMS 2010 의 특징

1. INCOTERMS 의 개념 변화

INCOTERMS 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통일규칙"이었으나, 2010 년도에 개정된 version 에서는 "정형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통일규칙"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INCOTERMS 는 서로 관습과 문화가 다른 무역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상이한 국제무역거래조건의 해석을 통일화 시키고 나아가 올바르게 거래조건을 사용하는 지침으로써의 역할을 하고자 함이다.

2. 거래 조건의 축소

INCOTERMS 2010 에서는 불필요한 기존의 거래조건을 통/폐합함으로써 거래조건의 수가 13 개에서 11 개로 감소하였다.

EXW, FOB, FAS, FCA, CFR, CIF, CPT, CIP, DDP	유지
DAF, DES, DDU	통합 ⇨ DAP
DEQ	변경 ⇨ DAT

3. 보안에 관련된 규정 도입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9.11 테러 이후 물품의 이동에 있어서 보안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컨테이너의 정밀검사와 같은 강제적인 보안검사제도(ex. 미국의 CSI 제도)가 도입되었다. INCOTERMS 2010 에서 이러한 검사가 모든 수출입에서의 강제적인 요건의 일부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지만, 매매당사자 사이에 보안에 관련된 협조의무를 할당하고 있다. 즉, INCOTERMS 2010 의 각 조건 별 본문 A2 항 /B2 항, A10 항 / B10 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안관련 통관을 이행하거나 보안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 보관, 이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상호협력 할 의무(물증보관의 계속성(Chain-of-Custody)확보)를 부과 하고 있다.

4. 터미널취급수수료의 취급에 관련된 규정 추가

THC 란 Terminal Handling Charge 의 약자로, 화물 처리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을 의미한다. INCOTERMS 2000 에서는 THC 에 대한 명확한 부담 의무가 없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야기 되었다. 하지만 INCOTERMS 2010 에서는 A6, B6 조항에 THC 비용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두어, 추후 논란을 피하고자 하였다.

5. 새로이 추가된 정형 거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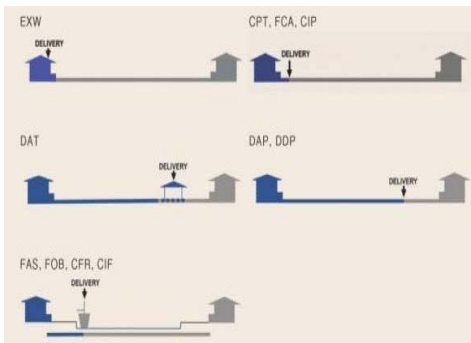
(1) DAT (Delivered At Terminal)

DAT 조건은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하한 물품을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으로, 이 조건을 사용할 경우 "DAT" 뒤에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을 표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터미널에는 덮개의 유무를 불문하며 부두, 창고, CY(Container yard), 도로, 철도 또는 항공화물터미널을 모두 포함한다. 이 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합의된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또한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지에 있는 터미널까지 운송하여 양하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고 처리하는데 따른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DAT 조건 대신 DAP, DDP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2) DAP 조건 (Delivered At Place)

DAP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은 계약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둬으로써 인도의무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DAP" 뒤에 지정목적지를 표시하여 사용한다. 이 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지정목적지 또는



<항목별 인도 시점>

경우에 따라 지정목적지의 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매도인이 자신이 체결한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 목적지에서의 목적지에서의 양하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매도인은 이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회수 할 권리가 없다. 이 조건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하여야 하는데 만약 당사자들이 수입통관절차를 매도인이 밟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DDP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III. INCOTERMS 2010 적용 시 유의 사항

1. 임의 규칙의 성격

INCOTERMS 는 협약, 협정, 조약 등과 같은 국제법과는 달리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제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임의규칙이므로 이를 강행규정과 같이 인식한다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INCOTERMS 를 적용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채택한 거래조건이 계약상 강행성을 가질 수 있고 그 조건의 해석은 INCOTERMS 의 내용에 따라야만 한다.

2. 불완전한 규칙

INCOTERMS 는 물품 매매 계약상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당사자간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이나, 운송계약, 보험계약에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추가적인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들을 준거법으로 채택하거나, 서로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3. 물품 인도 및 비용할당 등을 위한 명확한 장소의 명시

INCOTERMS 2010 에서는 각 조건의 선택 시 두

당사자간의 명확한 인도장소 및 항구를 명시해야만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책임구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무역거래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각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거래 상황에 적합한 조건의 이용

INCOTERMS 를 이용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자신에게 어떠한 조건이 유리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INCOTERMS 2010 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용방법과 각 거래조건의 상세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여야만 한다.

IV. 결론

INCOTERMS 2010 은 INCOTERMS 2000 과 비교하여 D 조건의 변화 이외에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더구나 통관 실무상 아직까지도 C&F 란 용어가 사용되고, 이것이 CFR 로 이해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바, 본 규칙에 새롭게 등장한 DAT, DAP 와 같은 조건이 자연스럽게 쓰이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필요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 새롭게 규정하고, 좀 더 쉽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INCOTERMS 2010 이 등장한 것인 만큼 이를 이용하면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세사를 비롯한 관세법인들은 본 규칙을 명확한 이해하고, 화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

FTA News

국내 공급물품의 FTA 원산지 확인

"수출도 하지 않는데 FTA 를 알아야 한다구요?"

2004 년 한-칠레 FTA 가 발효된 이후 2011 년 들어 우리나라는 한-미 FTA 와 한-EU FTA 의 발효를 앞두고 있어 FTA 와 관련하여 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통계에 따른 무역거래량만을 보더라도 기존 5 개의 FTA 협정국과의 거래량이 우리나라전체 수출입 물량의 약 10~15%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EU FTA 가 체결되면 그 비중은 30%를 상회할 전망이다.

이처럼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거래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FTA 는 직접 수출입 거래를 하는 업체만의 문제일까?

거래관계를 보더라도 수출업체는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수출업체는 국내에서 공급받은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원산지가 확인되어야 이를 토대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출업체는 국내 공급업체에게 원산지확인을 요구하게 되며, 국내 공급업체는 공급하는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FTA 가 직접 수출입 거래를 하는 업체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우리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산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거래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업체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해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며,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공급업체는 FTA 특례법에서 규정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FTA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급물품이 각 FTA 별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공급물품의 HS CODE 와 가격, 투입원재료, 투입원재료 조달가격, 원가구성내역, 제조공정 등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출업체의 원산지판정을 위해 공급업체가 이러한 영업상의 비밀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면,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수출업체 입장에서도 이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FTA 특례법에서는 국내 공급업체가 생산 및 원가정보 등을 수출업체에게 직접 제공하는 대신 공급물품의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하여 그 결과만 수출업체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를 “원산지 확인”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원산지(포괄)확인서”이며, 원산지확인서를 통해 원산지 충족이 입증된 국내 공급물품만이 한국산 원재료 또는 완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출업체가 그냥 도장만 찍어 달라고 합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국내 공급업체는 스스로 각 FTA 별 원산지를 판정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출업체가 필요한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체크)하여 국내 공급업체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국내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거래관계에서

비교적 우위에 있는 수출업체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스스로 원산지판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판정을 위한 서류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원산지확인이 어려운 이유로 수출업체가 제시한 확인서에 도장만 찍어주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이는 수출업체와 국내 공급업체 양쪽 모두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원산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잘못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사후 검증에서 발견되는 경우 허위·부정서류 발급에 대한 책임과 상대 수입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로 인한 기업 신뢰도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적합한 원산지판정의 절차를 결여한 채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였으므로 부정·오류·허위발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수출업체가 공급물품에 대해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 FTA 별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한 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판정의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원산지(포괄)확인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기준에 원산지확인서는 공급물품이 원재료 또는 완제품인지 여부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원산지(포괄)확인서”와 “원산지확인서”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최근 개정을 통해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일원화되었다. 따라서 국내공급업체는

수출업체가 원산지확인서 요청하는 경우 공급물품이 원재료 또는 완제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통해 원산지 확인을 해주면 된다.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은 공급하는 물품의 HS CODE 에 따라 각 FTA 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한다. 원산지포괄확인 기간은 거래관계에 따라 공란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무조건 12 개월로 기재할 필요도 없다. 즉, 1 회성 국내공급인 경우에는 포괄확인기간을 공란으로 두어야 하며, 부가가치기준 적용물품으로서 원재료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해 원산지 충족여부가 가변적인 경우에는 포괄확인기간을 축소하거나 공란으로 두고 발급하여야 한다.

이처럼 직접 수출입을 하지 않는 국내 공급업체라도 FTA 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공급업체가 적합한 원산지판정에 근거하여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다면, 이는 수출업체의 정확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도움을 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수출업체의 FTA 국가로의 수출증대, 국내공급물품의 수요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국내공급업체의 정확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은 효과적인 FTA 활용의 필수요소 중의 하나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 영 훈

kimyh@customsservice.co.kr

¹ 한국무역협회 2010 년 12 월 통계

Voices From The Fields

수출기업을 위한 전략물자제도

요즘 인기 있는 스마트폰도 전략물자가 될 수 있는가?

전자파 차폐필름으로 쓰이는 폴리이미드 필름의 원재료는 전략물자이다. 전략물자라는 용어가 우리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용어 같지만, 전략물자는 정말 우리 곳곳에서 같이 하고 있다. 내가 오늘 무심코 다루고 있는 이 물건도 전략물자가 아닌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전략물자란

대량 파괴무기 또는 재래식무기 및 그 운반수단과 이의 제조, 개발에 이용이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하고 이러한 물품 등이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에게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된다.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수출통제품목에 규정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이다.



□ 전략물자의 확인

모든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는 제조한 품목이나 거래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방법은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 또는 사전판정기관에 의뢰하는 사전판정으로 구분한다.

자가판정이란 수출업체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과 기술이 전략물자 기술수출통합고시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것을 말하고, 사전판정이란 전략물자 여부 판정이 어려운 경우 사전판정기관에 해당여부를 의뢰하여 판정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판정을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이용하면 판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수출허가

수출자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매 수출시마다**

사전에 수출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도 전략물자 신고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허가 받으면 된다. 물론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인증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포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상황허가

상황허가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WMD(대량살상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를 알았거나(Know 요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Suspect 요건) 그리고 허가기관의 장이 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상황허가 대상품목(Inform 요건)에 해당되는 등의 “상황”일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상황허가의 Suspect 요건은 대외무역법 제 19 조제 3 항에 기술되어 있다.

□ 자가판정과 사전판정 효력

사전판정기관(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정식적 절차를 의뢰한 사전판정 결과만 법적 효과를

가진다. 자가판정은 업체 스스로 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 전략물자 불법수출 그 당황스런 귀결

대외무역법은 전략물자의 국제적 확산을 목적으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였거나 거짓·부정의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동법 제 53 조에 의해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중개하는 물품 가격의 5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전략물자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기업경영의 입장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보다는 최대 3 년간 개점휴업 사태를 초래 할 수 있는 전략물자 무역금지 처분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박 종 일

jjipark@customsservice.c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2011 년 신묘년을 맞이하여 전반적인 법률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법률 용어 및 문장체계의 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관세와 무역에 관련된 주요 이슈 별 법률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 법의 시행규칙도 개정되었으며, 201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법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허보세구역 운영시 제재:** 법 위반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 반입등 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을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외에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확대함.

- **특혜원산지제도 개선:** 세관장에게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제출 등 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혜원산지 관련 제도의 체계화 및 조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통관의 제한:** 세관장이 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에 대한 통관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내산업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규정을 신설함.
- **기본세율 인하:** 녹색성장에 필요한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원자재·부품 등에 대한 기본세율을 인하함
- **감면제도 폐지:** 관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계획에 따라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 안전용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 **공해의 개념:** 공해의 개념에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하여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내국물품으로 보아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 **관세감면 기한 및 대상품목:**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 중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의 일몰기한을 2010 년 12 월 31 일에서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1 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10 퍼센트 포인트 낮추고, 현행 260 개 감면대상 물품 중 방폭 전동기, 기어 절삭기 등 83 개 물품은 제외하였으며, 수냉설비 시스템, 웨이퍼 보조시스템 등 83 개 물품을 추가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지속적인 체결 및 확대시행에 발맞추어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 등 모든 무역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201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법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 면제: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액물품,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원산지 사전검사를 받은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 원산지 조사 등에 불복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원산지 조사 등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싱가포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등과 칠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자 등으로 정함.

- 라오스산 궤련담배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 배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라오스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궤련담배에 대하여 협정 관세율적용을 배제함.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시 수출신고수리필증 제출 의무 생략: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때 수출신고수리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확인서 서식의 단일화: 생산자가 생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때 종전에는 그 생산 물품이 최종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확인서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원산지확인서로 단일화하고,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작성일부터 12개월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증명서의 보정 요구 완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 조사 등에 관한 심사 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기타 개정 법규

관세법 외에 개정된 법규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대외무역 관리규정 등이 있으며, 2011 년 간이정역환급률표도 함께 개정고시 되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지 아

(jachoi@customsservic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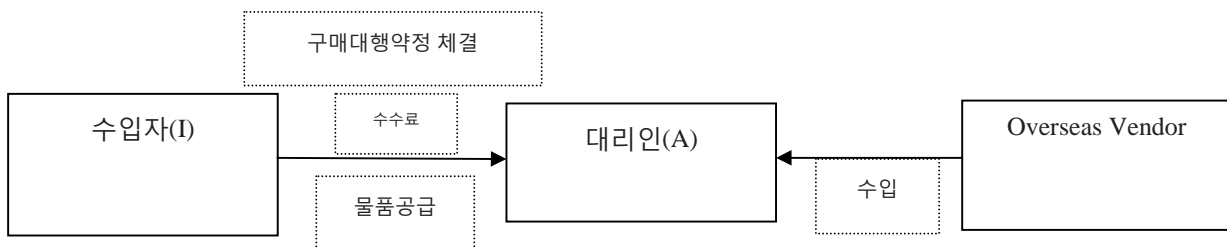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터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 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터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에게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구매수수료 과세 (HQ546037 1996.01.31)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 30 조 1 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 조정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세법 제 30 조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요소에 해당되는 비용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비용과 공제되는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거래사실

1. 수입자(I)인 Target 은 미국전역에 백화점 및 소매상을 운영하며, 백화점 은 (I)와 Hudson 및 Mervyn's 를 포함한 자회사가 운영함.
2. (I)는 대리인(A)인 AMC 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다량 획득하였으며, 이로 인해 (I)와 (A) 는 특수관계가 성립함.
3. (I)는 (A)와 1999 년 2 월 1 일 구매 대행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소매상, 백화점, 신제품 및 다량판촉 조직체의 대리인으로써 마케팅과 공급 망 제공

역할을 수행함.

4. (I)의 자회사인 Hudson 과 Mervyn's 는 (A)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각각 체결함.
5. 구매대행 약정에 따르면, (A)는 비독점적으로 (I)와 자회사를 위해 공급 망 제공 및 제품 구매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구매대행 업자로서 활동함.
6. (A)는 (I)와 자회사를 위해 제조업자와 공급자로부터 상품선적을 위한 공급처 확인, 제품확보 및 선적준비업무 등을 행함. 약정에 의하면, (I)가 수입자로 추정 됨.

7. 구매대행 약정에 따르면, (I)와 자회사 (A)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은 구매대행 약정에 기술되어 있음. 해당 약정에 따라, (A)는 (I)에게 받은 주문대로 (I)에게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함. (A)가 언제 그러한 역할을 행하고, (I)에게 언제 제품을 재 판매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조건 또는 정황은 없음.
8. 약정에 따라, (A)는 '글로벌 공급 망 확보 용역 비용' 또는 수수료의 형태로 대가를 받게 됨.

수수료는 제품 판매가격 비율로 책정이 되며, (A)가 판매자와 협상한 조건에 따라 F.O.B 가격 또는 Ex-work 가격이 됨. 수수료는 제품 선적 시에 지불이 되며, 수수료 비율은 4.54%에서 4%, 5.1%에서 4% 등으로 다양하고, 특정 기간 동안 선적된 제품에 누적된 미화 금액에 따라 결정 됨.

9. 약정에 의하면 수수료는 (A)에게 즉시 완납되며, 해당 수수료는 클레임, 비용상쇄, 대응클레임 또는 (I)가 (A)에게 대응하기 위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없음. 또한 수수료는 (A)가 정한 환율의 미국 통화로 지불되어야 함.

10. (A)는 (I)의 서면 요청과 동시에, 약정에 따라 결합 물건의 반환 또는 보상 청구와 관련하여 (I)를 돕기 위한 모든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반면, (I)는 '수입물품 클레임 처리 정책'에 응해야 함. 또한 (A)는 클레임 회복에 관한 합리적인 노력 노력을 해야 하지만, (A)의 중대한 태만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의하지 않는 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11. (I)가 제시한 서류를 보면, (I)가 주문한 제품의 특정 선적 분에 대해 지불되는 별개 비용에 대한 언급이 있음. 해당 제품은 (A)가 개발을 할 것이며, 해당 개발 용역은 시장연구와 수입제품 생산기준 공표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 짐.

12. (A) 제품 관리 책임자들은 최근의 소매성과를 분석하고, 향후의 판촉 기회를 조사하며, 원단, 판매처, 가격, 배송, 광고, 집중 공략 판매 행사, 소매 및 수익 율 목표에 따른 프로그램 설정을 위해 전략을 세움. 또한, (A)는 패션 동향을 분석하고, 핵심 패션동향 및 색감을 개발 함. (A)는 원단, 스타일, 평면 스케치, 치수 측정, 가격, 배송날짜와 그 프로그램에 적합한 기타 아이템들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될 각 아이템의 'Objective sheets'를 개발할 수도 있으며, 이런 정보를 자신의 해외 사무소에 보내고 제품 생산을 위한 최적의 역외 공장을 결정 함.

□ 쟁점

1. (I)와 자회사가 (A)에게 지불한 금액이 관세법에서 규정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진정한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가?

2. 시장 연구와 수입 상품의 디자인 기준 공표를 행하는 대가로 (A)가 청구하는 제품 개발 비용이 '생산지원'에 해당하는가?

□ 쟁점검토

1. 법적 근거

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를 위해 선호하는 방법은 거래가격 방법임. 거래가격이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제품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함.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직/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는 총 금액을 말하며, 진정한 구매수수료는 이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

나. 진정한 구매수수료 여부는 각 사안의 관련요소에 따라 결정해야 함. 진정한 구매 대행 관계 및 대리인에게 지급된 금액의 진정한 구매 수수료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음. 대리인은 수입자를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독립된 판매자로서 행동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조자를 대표하여 행동하여서도 아니 됨. 그 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구매자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판매자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됨.

다. 수입 제품의 거래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가산한 가격이며, 생산지원은 이 가산요소들 중 하나임. '생산지원'이란 직/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제품의 생산 또는 미국으로의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행하는 수입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 도판, 디자인 과 고안 및 스케치" 등을 들 수 있음.

2. 관련 판례 및 예규

가. Jay-Arr Slimwear(1988)

대행 관계가 존재하는지 결정함에 있어 주요 고려사항은 대리인에게 위임된 일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통제할 수 있는 수입자의 권리 임.

나. New Trends Inc.(1986)

대리인에게 수여된 재량의 정도 역시 고려되어야 함. 또한, 법원은 해당 판례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조사 함.

대리인의 행위가 주로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가?

대리인이 선적과 일 처리 및 그에 따른 비용에 책임을 졌는가?

상업송장에 사용된 언어가 당사자와 대리인 간의 관계에 비추어 연계성이 있었는가?

대리인이 물품의 손실, 파손 등의 위험을 인수 하였는가?

대리인이 재정적으로 제조 자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는가?

다. Customs Service General Notice (1989. 03. 15)

구매대리인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는 것과 구매 대리인으로써 행동하는 것은 다른 두 개의 사안이며, 세관은 후자를 입증하기 위해 증빙 자료를 조사할 권한이 있음.

라. HRL 544621(1991. 04. 22)

수입상품의 생산에 꼭 필요한 활동들만 생산지원으로 간주 됨.

3. 쟁점검토

가. 구매수수료

1) 약정에 따르면, (A)는 F.O.B 또는 Ex-work 가격 중 하나를 선정하여 판매가격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며, 수수료는 상품 선적 시에 지불되어야 함.

2) 수수료 비율은 12개월간의 제품에 대한 총 미화 금액에 따라 다양하며, 구매된 제품 금액이 12개월 동안 특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I)는 선적된 상품의 불륨에 관계없이 일정 요율인 '최소 서비스 요율'을 적용함.

3) (I)의 주장에 따르면, (I)는 (A)의 행위들을 통제 함. 약정에 의하면, (A)는 (I)의 구매 대리인으로서 행동하지만, (I)가 그러한 통제 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더욱이 (I)의 서신에 따르면, (I)는 약정에 제시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나, 해당 서비스 비용은 상품 총 금액의 인상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3%수익 율의 총 합임.

4) (A)는 명확하게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특정거래의 당사자로서 행동할 것이며, (I)에게 제품 재판매 행위를 할 것임.

5) (I)는 선적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고 나면, (I)는 제품의 손상 및 불량에 대한 손해 회복을 위해 (A)의 '수입물품 클레임 처리 정책'에 응해야 함. 또한, (A)는 그러한 회복을 돕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하나, (A)는 중대한 태만 또는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만을 짐.

6) 유사한 약정에 관해 기술한 HQ 547643 에서도 언급했듯이, 구매대행 프로그램은 진정한 당사자-대리인간의 관계에 대한 연계성이 없으며,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진정한 구매수수료로 취급되지 아니 함.

나. 생산지원

1) (I)의 제안에 따르면 기술, 개발, 도판 또는 디자인 작업은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수행하는 경우; 구매자의 피고용인 도는 대리인이 수행한 경우; 미국 내에서 행하는 기타 기술, 개발, 도판, 디자인, 고안 및 스케치에 부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님. 더욱이 (I)의 주장에 의하면, '생산 개발 용역'은 주로 생산이라 말할 수 있는 단계 이전에 행해지는 연구활동으로 구성 됨.

2) 약정 및 (A)의 마케팅 책자에 의하면, (A)의 '생산 개발 용역'은 디자인, 패션동향 및 색감 개발, 샘플 생산준비, 원단, 스타일, 평면 스케치에 관한 명세서 제공, 치수측정, 생산을 위한 최적의 제조자 선정 등을 포함 함.

3)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는 대상 제품의 생산에 필수 요소이나, 해당 서비스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행해진 경우에만 과세가 됨. (A)의 '생산 개발 용역'이 미국 내에서 행해진다는 (I)의 설명에 기초하여, 그러한 서비스는 관세법에서 규정한 '생산지원'해당하지 아니 함.

□ 결정

1. 약정에 관한 제시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A)는 진정한 구매 대리인이며 (I)가 (A)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진정한 구매수수료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2. '생산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관세법에 따른 '생산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윤 순 형

(shyoon@customsservice.co.kr)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성공이 아닌 승리!



장승희
대표 관세사

2011년 새해를 위한 계획 모두 세우셨지요? 계획에 따른 전략도 세우셨을 테고요?

지난 몇 주간 혼자서, 또 여럿이 고민하며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새해의 매출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수익률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눈에 보이는 숫자를 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감하게 정할 것인가, 안정되게 잡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숫자의 숫자에 의한 숫자를 위한 고민이었습니다. 진정한 목표는 숫자 이전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새로운 것을 얼마나 이루고 배울 것인가, 우리의 서비스가 고객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진행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얼마나 보람을 느낄 것인가가 진정한 새해의 목표입니다.

'매 순간 온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고객감동과 직원행복' 경쟁적인 '성공' 보다 모두가 100 점을 받는 '승리' 그것을 2011년 새해의 화두로 삼겠습니다.

이번 Cover Story는 새로이 변경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INCOTERMS 2010에 대한 요약설명입니다. 숙지하시어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용어의 사용은 안정적인 수출입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Voices from the Fields는 수출기업을 위한 전략물자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경우 무역거래 자체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수출기업들은 필히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FTA News는 수출물품뿐 아니라 수출하기 위한 국내공급물품인 경우에도 FTA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수출물량이 없으므로 FTA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중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구매수수료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월 초 신한관세법인 상반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령 등 중요 사항 숙지를 위한 내부교육용 스케줄이었으나 많은 외부고객께서 참석하시어 성황리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많은 Needs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다음 교육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나가는 '성공'을 목표로 할 때에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일 것이지만, 나 자신과의 경쟁에서 성취해 나가는 '승리'는 지속적인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ZOOM-IN TRADE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shinhan@customsservice.co.kr)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ABOUT WRITERS

COVER STORY - INCOTERMS2010



신 성 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

FTA News- 국내공급물품의 FTA 원산지 확인



김 영 훈 관세사
(yhk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연 FTA 통관 실무 및 비즈니스 모델

Voices From The Fields- 수출기업을 위한 전략물자제도



박 중 일 관세사
(jipark@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통관 3부
- 통관 3부 팀장
- (주) 피델릭스 기업상담

관세 법령 변경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등



최 지 아 관세사
(ja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연 FTA 통관 실무 및 비즈니스 모델

US Rulings 연재⑨ 수수료의 과세여부 및 공제요소의 처리



윤 순 형 관세사
(shyoong@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통관 2부
- 통관 2부 팀장
- AEO T/F Team
- 레노버 기업 심사등

통관 29호 | 발행일 2011년 1월 15일 | 발행인 장승희 | 편집인 김연서
발행처 신한관세법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6-4
Tel 02-542-1181 Fax 02-544-9705 간별 월간